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주)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Stewardship Code>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주)는 (이하 "당사")는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이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원칙")을 수용하며, 그 이행을 위해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의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를 마련하여 2025년 09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수탁자 책임 정책, 이행, 공시 책임자

오민영 상무이사 / 사후관리팀 / my.oh@snsinvestment.co.kr / 02-6951-1697

수탁자 책임 정책, 이행 담당자

박인영 이사 / 경영관리팀 / iy.park@snsinvestment.co.kr / 02-6951-1428

김화인 과장 / 경영관리팀 / hi.kim@snsinvestment.co.kr / 02-6914-9377

[원칙 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주)(이하 "당사")는 2020년 9월 24일 설립되어 2021년 7월 15일 금융감독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되었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업무집행사원(조합원)으로 운용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 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조합")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 또는 업무감독조합원(이하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이익을 우선합니다.

당사는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충실"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당사의 임직원은 조합 및 투자자와 관련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조합규약,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으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조합 운용 전반에 걸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및 실행하고 감독하면서 투자대상회사 가치 제고 및 고객 이익 증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투자대상회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조합과 출자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된 내용을 출자자들에게 알리어 실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합을 결성하거나 출자자를 유치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과 수단을 통한 출자자 유인행위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선정사유 및 투자금액, 투자조건 등의 투자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출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이해상충 문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원칙 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

도록 투자대상자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재무구조, 성과 등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정기적인 투자자산 보고 및 수시로 이사회, 주주간담회 등의 참석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후 투자대상회사의 리스크 등급을 부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가능성 등의 위험요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등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의 담당 운용인력이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검토 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교류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있으며 투자 리스크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과 가치 제고 및 고객 이익 증진을 위하여 투자대상회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 등 동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투자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정책 등을 바탕으로 주요 재무, 비재무 경영사항에 관해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의 투자 정책, 내부 역량 등의 여건을 고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칙 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중장기 회사가치의 제고, 조합과 투자자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내부 자원과 조직체계,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위하여 투자대상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역 및 사후관리 담당임원이 제안하고 준법감시인 및 경영진의 승인 과정을 거치면서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는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요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투자보고회 등을 통하여 출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칙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사는 출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조합 및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내용을 연 1회 이상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반기별 사내 사후관리 보고회를 통하여 조합 운용 및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경영 및 재무 현황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출자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규약 및 법령에 따른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는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일정기간 보존하고 있으며, 수탁자 책임 이행 내역을 보존하고, 조합의 규약 및 정관에서 정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는 반도체 산업을 포함하여 각 투자 대상 섹터에 대한 폭넓은 지식 및 전문성과 충분한 투자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투자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운용, 회계, 리스크 관리 등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직체계를 설계하고 내부자원을 투입하며, 이들 자원과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임·직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내부 세미나를 통해 지식을 전파하여 투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끝.